

2022년 제1회 연구직 공개채용 공고

용인시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2년 2월 14일
용인시정연구원장

1. 모집 분야 및 인원 (3명)

채용부서	직 급	인 원	주요 연구분야
재정경제 연구부	연구위원	1명	• 용인시 재정 수입/수요 예측 •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분권 방안 연구 • 용인시 재정투자 평가 방안/제도 • 기금/특별회계 성과분석 등
자치행정 연구부	부연구위원	1명	• 인적자원관리, 정책분석평가 업무수행 ※ 빅데이터 분석 가능자 우대
문화복지 연구부	부연구위원	1명	• 문화·관광·예술 전반 업무수행 • 문화·관광·예술 분야 수요예측 • 문화·관광·예술 개발 및 효과분석

2. 응시자격

○ 공통사항(기준일 : 서류접수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, 「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」 제21조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응시연령 : 18세이상 59세 미만 (출생일이 1963. 1. 1. ~ 2004. 12. 31. 인 자)
※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령(정년)은 60세로 함
- 거주지 : 제한없음

※ 합격자 발표 후 4월 1일까지 근무개시 가능한 자 (근무개시가 안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)

【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(결격사유) 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【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】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○ 우대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전형별 가점 적용

가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국가공무원법 36조의 2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점수, 연구계획발표점수, 면접점수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함
 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

○ 응시 자격요건(기준일 : 공고일)

직 급	자격 기준
연구위원	·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·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부연구위원	·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· <u>※ 임용일 기준 학위수여 예정자 포함</u> ·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3. 응시서류 접수

○ (채용공고 및 서류접수) 2022. 2. 14.(월) ~ 2. 24.(목) **17:00**

[공고일 제외 10일]

※ 채용서류 보완 : 접수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

(마감 시간 이후 부적격 처리, 미비서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)

○ (접수방법) 전자메일 접수 (지원 분야별 해당 이메일 접수)

- 재정경제연구부 지원자 접수메일 : recruit2@yongin.re.kr

- 자치행정연구부 지원자 접수메일 : recruit3@yongin.re.kr

- 문화복지연구부 지원자 접수메일 : recruit4@yongin.re.kr

○ (제출서류 양식) hwp, pdf 2종 파일 모두 제출

- ① “채용부서-채용직급-응시자성명.hwp : 첨부서식
- ② ”채용부서-채용직급-응시자성명.pdf : 첨부서식 + 증빙자료

※ 반드시 첨부서식과 증빙자료를 1개 파일로 취합 후 제출

○ (참고사항)

- 전자메일로만 접수하며, 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전자메일로 공지
- 공고확인 :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(www.yongin.re.kr) 채용공고 란
-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-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○ (제출서류)

- 필수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
-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
- ③ 연구(직무)수행 계획서
- ④ 연구실적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(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)
※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서식 필수 참조(건별 3장 이내)
- ⑤ 최종학위 논문, 대표 논문 국문 요약서(서식 필수 참조)
- ⑥ 관련분야 (연구)경력증명서(최근 1년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)
※ 이력서 서식에 기재된 경력사항 증명서 미첨부 시 불인정
- ⑦ 주민등록 초본(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,
과거 주소 변동사항 제외하여 발급 후 제출,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)
- ⑧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(※ 학교명 가림처리 후 제출)
※ 해외 취득 박사학위는 ‘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’(한국연구재단 발급)
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동의서, 연구(직무)수행계획서, 연구실적목록, 요약서는
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
※ 블라인드 채용 원칙 필수 준수 : 학교명, 증명사진 등 가림처리 후 제출

- 선택 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국가보훈처 발행, 가점비율이 명시된 증명서)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기타 관련 논문, 연구실적, 자격증 등 증빙자료
(증명사진 삭제 또는 가림 처리 후 제출)

※ 해외 경력 및 기타 해외 학위 증빙 인정 범위 :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및 번역
공증 첨부 시 유효하며, 비협약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 확인서 및
번역공증 첨부

- 1차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: 연구(직무)수행계획 발표 자료(PPT) 및 파일로
제출한 증빙자료 원본

4. 전형별 합격자 결정기준

○ 배점기준 : 서류심사(20%) + 연구계획 발표(40%) + 면접심사(40%)

-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- 전형별 공통가점(취업지원대상자) : 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각각 가산

○ (1차 시험) 서류심사 (합격기준 : 평점 60점 이상)

- 정량지표 검증 및 평가항목별 심사
- 평가항목: 연구실적 및 경력(50), 지원동기(20), 연구수행계획(30)

가) 연구실적 및 경력(50점) : 학술논문의 게재실적(25점), 연구보고서
수행실적(25점)

나) 지원동기(20점) : 지원동기의 적정성(10점), 목표의식(10점)

다) 연구수행 계획(30점) : 잠재역량(5점), 체계적 업무수행 계획(10점),
담당예정 업무의 이해도(10점), 창의적 사고(5점)

- 가·감점 항목

- 가산점 : 재정경제연구부 지원자(회계사 5점, 세무사 3점)

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서류전형 점수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
하며,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

- 감점 : 제출서류에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증명사진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(-5점)

○ (2차 시험) 연구계획 발표(PPT) - 5개 항목 각 20점

- 평가항목: 채용분야에 관한 전문성, 발표의 논리성과 표현의 명확성, 질문에 대한 이해와 대응성, 추후 연구과제 수행능력, 용인시 정책개발과의 연계·부합성

○ (3차 시험) 면접심사 - 4개 항목 각 5점 × 심사항목별 가중치

-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

평 정 요 소(1점~5점)	가중치
① 전문지식과 연구(업무)수행 능력(모집분야 적합성)	6
② 시정 비전·과제의 대한 창의성	4
③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	4
④ 조직 적응도 (예의, 품성, 협동성 및 기여가능성, 활동성, 질서의식 등)	6

※ 2차 연구계획 발표 및 3차 면접심사를 병합하여 동시에 진행

- 면접 및 연구계획 발표 심사위원이 「탁월」, 「우수」, 「보통」, 「미흡」, 「아주미흡」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
- 각 전형별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
- 각 전형별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「미흡」 또는 「아주미흡」으로 평정하였거나,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「미흡」 또는 「아주미흡」으로 평정한 때에는 **불합격**으로 처리함

○ 최종결과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

-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연구계획 발표 ③ 면접심사 ④ 연구계획 발표
평정 요소 중 “채용분야에 관한 전문성” > “추후 연구과제 수행능력” >
“용인시 정책개발과의 연계·부합성” > “발표의 논리성과 표현의 명확성” >
“질문에 대한 이해와 대응성” 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※ 자치행정연구부 지원자 :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이후 빅데이터
분석 가능자 우선 선정

5. 근무조건(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및 보수 규정)

직 급	보수 수준	임용 기간
연구위원	공무원 5급 상당 적용	· 최초 1년 계약 · 계약기간 만료 시 연구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재임용 가능
부연구위원	공무원 6급 상당 적용	

- (보수수준) 연봉제 (2022년 공무원 보수기준표 적용)
- (근무시간) 주40시간 (1일 8시간 근무)
- (근무지)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-17, 3층·5층
-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용인시정연구원 복무 규정 준수

6. 전형절차 및 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. 14.(월) ~ 2. 24.(목)	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	10일
3. 3.(목)	서류심사	
3. 10.(목)	서류심사 결과 발표	홈페이지
3. 15.(화) ~ 3. 16.(수)	연구계획 발표 및 면접심사	
3. 21.(월)	최종합격자 발표	홈페이지
3. 21.(월) ~ 3. 28.(월)	신원조회 및 신체검사	임용서류 등록기간
※ 임용 및 계약 : 별도 공지		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 사항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이력서 등 연구원 양식이 존재하는 제출서류는 통합하여 한글 문서(HWP) 1개 파일로 작성하고, 그 외 동의서 및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

※ 파일명: ‘채용부서-채용직급-응시자성명.hwp’, ‘채용부서-채용직급-응시자성명.pdf’

- 제출서류 내용 허위 작성, 증빙서 위변조,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 사실 적발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
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, 또는 학교명이 명시된 학위(졸업)증명서, 증명사진이 포함된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서류심사 점수의 5점 감점 (증빙자료의 해당내용 삭제 또는 가림처리 후 제출)
-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, 해당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 접수 없이 기존 점수의 효력 인정
- 합격자 이외에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의 동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채용 시 제출한 서류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(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).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접수기관에서는 별도의 보완 통보를 하지 않음

-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yongin.re.kr/>) 채용정보 란에서 확인
-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정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

○ 이의 신청 방법

-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 및 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(recruit@yongin.re.kr)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

○ 기타 문의 : 용인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(031-329-5414)